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868
----------	------

제출일자 : 2020. 10. 6.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단장 임무,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안 제5조~제7조)
-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2의5항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2) 입법예고(2020. 9. 7. ~ 9. 28.)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기능)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이 수행할 업무는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단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달성군 (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 ① 지원단 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제3조제2항에 따른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 · 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시 고려사항)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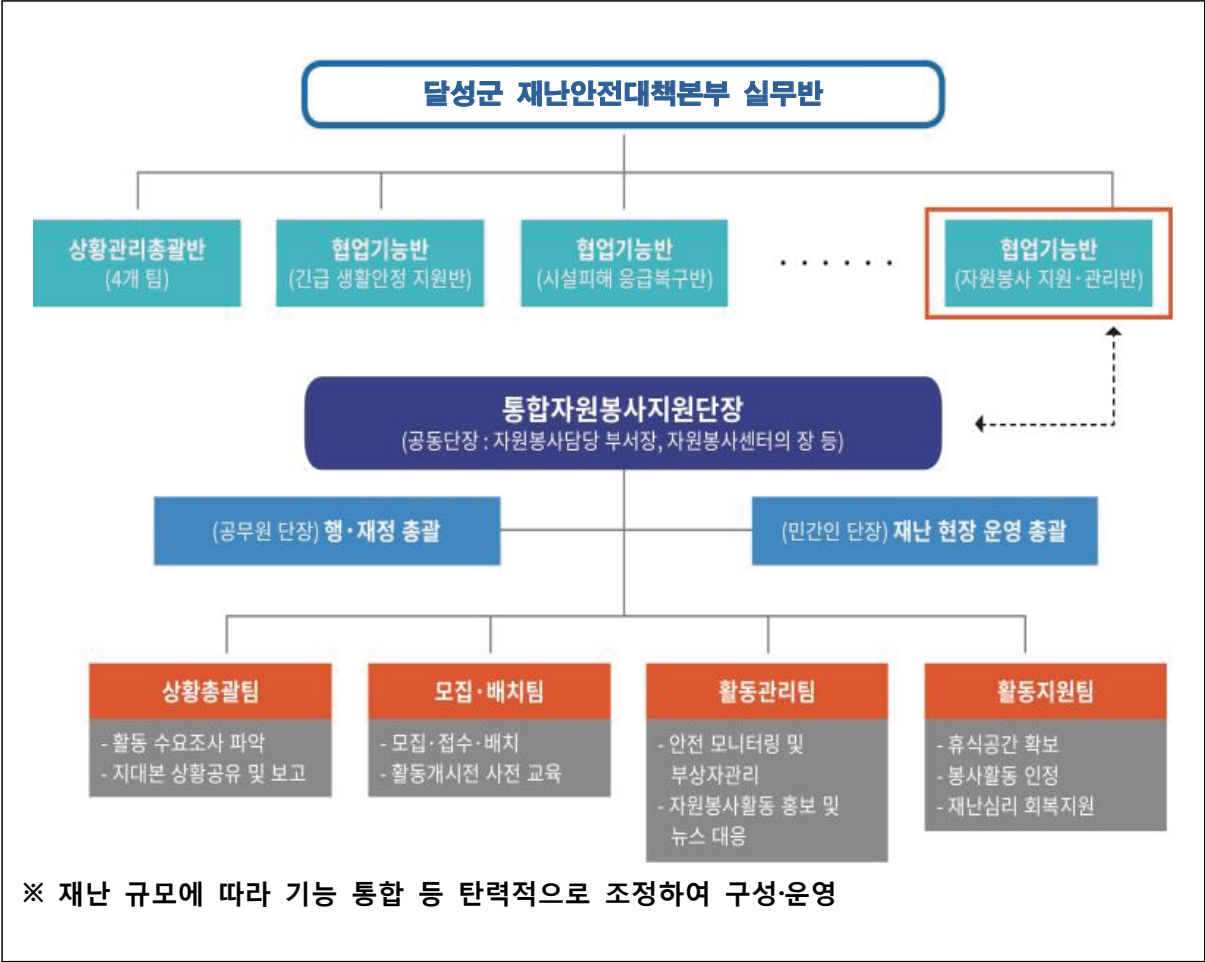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2]

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표(제6조제2항 관련)

팀 명		직 위	담당 사무
공무원단장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사항 총괄 ▶ 기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관련 사항 지원
민간인단장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장	▶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총괄
실 무 팀	상 황 총괄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팀장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 (상황공유·보고 등)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모집· 배치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팀장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 동 관리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담당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사항 총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 동 지원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전산코디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